

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

□ 추진 배경

- 「청탁금지법시행령」 개정(23.8.29. 국무회의 의결)에 따라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이 상향될 예정임
 - 또한,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(금액상품권은 제외)에 한해 선물이 허용될 예정
- 한편,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상 '금품등 수수 금지' 관련 규정을 청탁금지법 상 세부 행위기준에 맞춰 통일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
 - 그러나, 기관별 행동강령은 훈령, 조례·규칙, 사규 등으로 제정형식이 상이하고, 개정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기관별 행동강령이 개정되기 전이지만,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행동강령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마련하여 조치할 필요

□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

- (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)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,
-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변경(10만원→15만원, 설날·추석 20만원→설날·추석 30만원)

- (선물 범위 확대) 선물 구입·전달이 간편한 '온라인·모바일 선물시장'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, 스포츠·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
 -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선물범위를 '물품 및 용역상품권'(금액상품권은 제외)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

□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

- 각급 공공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서 '금품등의 수수 금지' 관련 가액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, 「청탁금지법시행령」 개정사항을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조속히 반영
 -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령이나 훈령, 지방자치단체는 규칙, 지방의회는 조례, 공직유관단체는 사규 등으로 제정되어 그 제정형식이 상이하며, 개정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- 다만,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조속한 개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경우,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
 -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지 않은 가운데 청탁금지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여, 소속 공직자가 현행 자체 행동강령에 반하더라도 행동강령 미위반으로 봄
- ※ (예시) 청탁금지법시행령 시행 이후,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·기공품의 현행 가액기준인 10만원, 설·추석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
- ※ (예시) 현행 기관별 행동강령이 유가증권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5만원 이내 '물품 및 용역상품권'을 수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

참고1

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[신·구 조문대비표]

현 행	개 정 안
[별표1]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제1항 관련)	[별표1]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제1항 관련)
1.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3만원	1.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3만원
2. 경조사비: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.	2. 경조사비: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.
3. 선물: <u>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</u> 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"농수산물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"농수산가공품"이라 한다)은 <u>10만원</u> 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<u>20만원</u>)으로 한다.	3. 선물: <u>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(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, 이하 "상품권"이라 한다)</u> 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"농수산물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"농수산가공품"이라 한다)과 <u>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</u> 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<u>30만원</u>)으로 한다. <u>가. 금전</u> <u>나. 유가증권(상품권은 제외한다)</u> <u>다. 제1호의 음식물</u> <u>라. 제2호의 경조사비</u>
비고 가. 제1호, 제2호 본문·단서 및 제3호 본문 ·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	비고 가. 제1호, 제2호 본문·단서 및 제3호 본문 ·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

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<신 설>

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다.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

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하여 발행·판매하고,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"발행자등"이라 한다)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, 백화점상품권·온누리상품권·지역사랑상품권·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.

라.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

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하되,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.

라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

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마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

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